



제422회국회(임시회)
제1차 정무위원회

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 ‘원본’ 개념에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포함〉
■ 정부(의안번호 제2205355호)

2025. 2.

정 무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정명호

목 차

I . 제안경 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: ‘원본’ 개념에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포함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정 부
2. 제 안 일 : 2024. 11. 7.
3. 회 부 일 : 2024. 11. 8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증서 등의 원본 또는 등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등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37조제2항).

Ⅲ. 검토의견: ‘원본’ 개념에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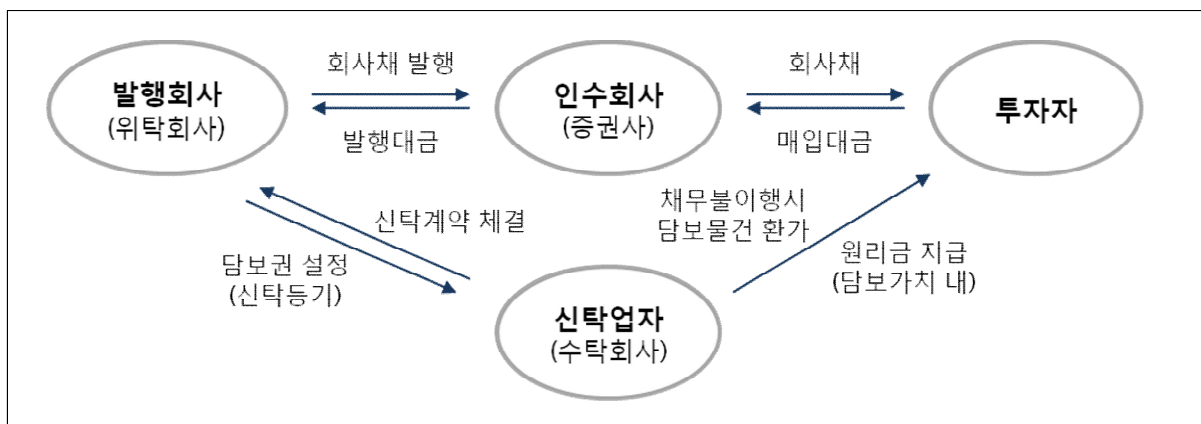
☐ 개정안은 ① 신탁증서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갖추어둔 경우 원본 또는 등본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, ② 사채원부의 등본이 원본과 동일함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자화문서와 대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, 제37조제2항).¹⁾

현행	개정안
제16조(신탁증서의 보존과 열람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신탁증서는 그 원본을 본점에 갖추어 두고, 등본을 각 지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16조(신탁증서의 보존과 열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. 이 경우 신탁증서의 원본 또는 등본을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본점 또는 지점에서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등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37조(등본의 작성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위탁회사의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하여 원본과 다름없음을 인증하여야 한다.	제37조(등본의 작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원본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)-----.

1) 참고로, 개정안은 ‘원본’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, 정부 차원의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, 동 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.

□ 담보부사채는 원리금 보장을 위해 부동산 등 담보물을 근거로 발행하는 회사채를 말함. 이는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데, 위탁회사(발행회사)가 신탁업자(수탁회사)에게 보유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회사채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됨.²⁾

< 담보부사채 기본구조 >



(자료: 금융위원회)

□ 현행법에 따라 담보부사채 발행을 위한 신탁계약은 위탁회사와 신탁업자 간의 신탁증서로 체결하는데, 이 신탁증서의 원본은 신탁업자의 본점에, 등본은 각 지점에 구비해 두어야 하며,³⁾ 이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.⁴⁾

2) 「담보부사채신탁법」 제3조(사채의 발행) 사채에 물상담보(物上擔保)를 붙이려면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(이하 “위탁회사”라 한다)와 신탁업자 간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여야 한다.

3) 「담보부사채신탁법」 제3조(사채의 발행) 제12조(신탁계약) 신탁계약은 신탁증서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신탁증서의 보존과 열람) ① 신탁증서는 위탁회사와 신탁업자가 각각 한 통씩 보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신탁증서는 그 원본을 본점에 갖추어 두고, 등본을 각 지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③ 제2항의 신탁증서의 원본 또는 등본은 위탁회사의 주주, 채권자 또는 사채응모자가 청구하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4) 「담보부사채신탁법」 제105조(과태료) ②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, 이사, 파산관재인,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, 제55조의 대표자,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4. 이 법에 따라 갖추어 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서류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적은 경우

- 또한, 담보부사채를 발행한 위탁회사는 사채원부⁵⁾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, 원본과 다름없음을 인증한 그 등본을 신탁업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함.⁶⁾

가. 전자문서·전자화문서 보관을 통해 원본 및 등본 보관의무 같음

-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⁷⁾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⁸⁾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한 문서 보관을 같음할 수 있음

5) 사채원부는 「상법」 제488조*에 따라 사채권자와 회사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, 사채의 발행 및 관리를 위해 작성됨.

「상법」 제488조(사채원부)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1. 사채권자(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외한다)의 성명과 주소
2. 채권의 번호 (이하 생략)

6) 「담보부사채신탁법」 제37조(등본의 작성) ① 위탁회사는 사채원부의 등본을 작성하여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등본에는 위탁회사의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하여 원본과 다름없음을 인증하여야 한다.

7)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(전자문서의 보관)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같음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음할 수 없다.

1.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

2. 전자문서의 작성자, 수신자 및 송신·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(이하 “전자화대상문서”라 한다)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(이하 “전자화문서”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같음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음할 수 없다.

1.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

2.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

8) “전자문서”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·변환되거나 송신·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고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), “전자화문서”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를 말함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제2항). 즉, 전자문서는 전자화문서를 포괄하는 개념임.

< 전자문서 구분 >

전자문서	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전자문서	- 워드프로세서 파일 - 전자우편, 카카오톡 메시지 등 - 소프트웨어 - 디지털콘텐츠(음원, 사진, 동영상 등)
	전자적 형태로 변환된 전자화문서	- 종이문서를 스캔한 PDF파일 - 종이문서를 촬영한 JPG파일 등

자료: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(2022)」, 과학기술정보통신부.법제처, p.6

을 원칙으로 하고, 예외적으로 ‘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’
에는 문서 보관을 갈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- 이 예외 사유에는 「상법」 제33조⁹⁾ 및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3제4항¹⁰⁾ 등이 해당하는데,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 등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된 원본 종이문서로 보관하여야 하며, 이를 스캔하여 전자화문서로 보관한 경우에는 문서 보관으로 갈음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.¹¹⁾

□ 그런데, 현행 「담보부사채신탁법」 제16조제2항¹²⁾은 ‘원본’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없이, 신탁증서의 ‘원본’을 신탁업자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는 ‘다른 법령에 특

9) 「상법」 제33조(상업장부등의 보존) ①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*으로 정한다.

「상법 시행령」 제3조(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)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(이하 이 조에서 “장부와 서류”라 한다)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(이하 이 조에서 “전산정보처리조직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있는 원본을 보존하여야 한다.

1.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보존하는 방법 (이하 생략)

10)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3(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)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. 다만, 계약서 등 위조·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*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5조의7(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)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.

1. 「상법 시행령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

2. 등기·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

3.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·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. 다만,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.

4. 인가·허가와 관련하여 제출·접수한 서류 및 인·허가증. 다만,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.

11)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(2022)」,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법제처, p.28

12) 「담보부사채신탁법」 제16조(신탁증서의 보존과 열람) ② 제1항의 신탁증서는 그 원본을 본점에 갖추어 두고, 등본을 각 지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'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 보관으로 문서 보관을
갈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, 신탁증서의 '원본'을 종이문서로 보관하
여야 하는지 또는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해
석상 명확하지 아니함.

- 실제, 법령 중에는 '원본'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, 사업자 등은 '원본'
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하여,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
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
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어 왔음.

□ 이에 개정안은 '원본' 및 '등본'의 개념에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
전자화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방
지하려는 취지임.

□ 개정안은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 보관을 통해 동 법률상의 원본 및 등
본 보관의무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려
는 것으로, 종이문서 관행 해소를 위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임.

나. 전자화문서를 통한 원본 대조 인정

□ 현행법 제37조제1항·제2항¹³⁾은 담보부사채를 발행한 위탁회사가 신탁
업자에게 사채원부 등본을 교부할 때, 그 등본이 원본과 다름없음을 인

13) 「담보부사채신탁법」 제37조(등본의 작성) ① 위탁회사는 사채원부의 등본을 작성하여 신탁업자 또는
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등본에는 위탁회사의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하여 원본과 다름없음을 인증하여야 한다.

증하도록 하고 있음.

□ 개정안은 사채원부 등본 교부를 위해 원본과 대조할 때, 종이문서 원본 뿐만 아니라 종이문서 원본을 스캔한 전자화문서로도 원본 대조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임.

□ 다만, 개정안 제37조제2항은 원본 대조 대상을 ‘전자화문서’를 포함한 원본으로만 규정하고, ‘전자화문서’가 아닌 ‘전자문서’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데¹⁴⁾, 이 경우 ‘원본’의 개념에 ‘전자문서’를 제외한 ‘전자화문서’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본 대조 대상을 ‘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’ 모두를 포함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.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제37조(등본의 작성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위탁 회사의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하여 원본과 다름없음을 인증하여야 한다.	제37조(등본의 작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원본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)----- -----.	제37조(등본의 작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 원본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)-----.

14)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처음부터 전자문서로 만들어져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전자문서는 당연히 원본에 해당하므로, 개정안에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함.

문 의 처
02)6788-5113